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-82조제1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신탁업무의 방법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제4-8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-82조(신탁업무의 방법 등) ①</p> <p>영 제104조제1항 단서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신탁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신노후생활연금신탁(노후생활연금신탁을 포함)2. 연금신탁(신개인연금신탁 및 개인연금신탁을 포함)3. 퇴직일시금신탁	<p>제4-82조(신탁업무의 방법 등) ①</p> <p>(삭 제)</p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금팀	
연 락 처	(02) 2100 - 2672